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314

제출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대시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 명칭인 근로자를 반영하여 제도 명칭을 근로자이사제로 함(안 제명)

- 근로자 :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나. 근로자이사제 적용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 공사·공단·출연기관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로 30명 미만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근로자이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자격 : 공사공단출연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
- 조건 : 노동조합 탈퇴, 노사협의회 대표 등 근로자 대표로서 참가하는 직 사임
- 임명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 등 절차 이행

라. 근로자이사는 기관별 비상임 이사의 1/3 이하에서 근로자 300명을 기준으로 1명 또는 2명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

- 기관별 근로자이사 수 : 근로자 300명이상 2명 이내, 300명 미만은 1명 이내

마.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법령·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를 적용하되,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 종료시는 임기도 함께 종료되도록 함 (안 제8조).

바. 근로자이사의 권한, 책임, 이사회 참석시 제척·회피 등은 일반 비상임이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사. 근로자이사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금지,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학습기회 제공 등 충분한 지원과 협력 등 기관장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12조)

아. 근로자이사에 수당 등 지급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보수 : 무보수 원칙, 수당 : 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 등 지급가능

자.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해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4조).

차. 이사의 정수를 정관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조례의 이사 정수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이사의 정수만큼 증원하여 근로자이사제의 일관성 있는 도입을 도모함.(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나.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2)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평가제외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 개선의견
- 근로자이사 임명시 성별에 따른 고려 적극 필요
- 제7조(정수)를 근로자이사 임명시 '근로자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 여성이사가 없는 경우 근로자이사에 여성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라고 수정

※ 개선의견 반영결과 : 반영불가
① 현재 모든 공사공단출연기관 이사회에 여성이사가 1명이상 임명
② 근로자이사는 각 기관별 1~2명으로 소수이며 각 기관별 전체 근로자의 추천이나 투표로 선출될 예정으로 조례로 여성이사 임명을 강제하기 어려움

다. 기타

(1) 입법예고 (2016. 6. 16. ~ 7. 6.) 결과 :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공기업총괄팀 김성태(☎ 2133-677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사 등"이란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4. "근로자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5. "기관장"이란 공사 등의 장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

단 및 출연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 등은 근로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3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임명) ① 근로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근로자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제6조(자격) ① 근로자이사는 공사 등 소속 근로자 중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른 잔여 재직기간이 근로자이사의 임기에 미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제7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근로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 각각 근로자이사 2명
2.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사 등: 각각 근로자이사 1명

제8조(임기)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9조(권한) ① 근로자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등) 근로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 · 회피) ① 근로자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근로자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자이사를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근로자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기관장은 근로자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 · 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학습기회 ·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⑤ 근로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근로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3조(수당 등) ① 근로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검토, 이사회 참석 등에 소요되는 수당 ·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로자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15명"을 "17명"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5명"을 "16명"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10명"을 "11명"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안)
변호사 오윤식 (법무법인 공간)	**<제명변경>**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검토의견 : 미반영)** 이 조례는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례로서, ‘산하기관’이라는 용어에는 사업소가 포함되어 제명으로 부적합하며, 이미 조례안 제3조(적용범위), 제4조(대상기관)에 적용 대상기관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존대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유지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안)
변호사 오윤식 (법무법인 공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대시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문구수정>** ○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언급되지 않으면 근로자이사제의 방향성 상실이 우려되고, 근로자 참여가 없는 협력과 상생은 또 다른 '근로자 통제수단 내지 기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 두 가지 안 중 하나와 같이 수정 <1안>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안> 근로자의 참여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검토의견 : 반영)** 근로자의 경영참가 문구추가로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안)
노사정 실무 TF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자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문구수정>** ○ 근로자이사를 마치 시장 외에 기관장이 법에 근거없이 임명하는 것으로 오해소지 있으므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 추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자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자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 **(검토의견 : 반영)**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근로자이사의 임명권자가 법령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서울의료원의 경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이사는 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안)
변호사 오윤식 (법무법인 공간)	제5조(임명) ②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문구수정>** ○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 이익을 대표하는 직의 사임시기에 관하여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고, 근로자이사로 임명된 이후 노동조합원 등의 직을 실수나 의도적으로 얻는 경우 이사회 관계자로부터 그 사임과 증빙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직에서 당연퇴직 규정 ○ 제5조(임명) ②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공개모집에 응모 전에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고 응모시에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미반영)** 근로자이사 공개모집 응모시에는 근로자이사 임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노동조합원 등 자격 또는 직을 탈퇴 또는 사임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함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3.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7조,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 제62조 및 제70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직 4. 기타 노동관계법 또는 공사 등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익을 대표하는 직 또는 근로자대표직이나 이와 유사한 직 ③ 근로자이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로, 이사회관계자로부터 그 사임과 증빙자료 제출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지체없이 그 직에서 탈퇴하거나 사임한 후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직에서 당연퇴직한다.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안)
서울메트로 노동조합 위원장 김철관	제5조(임명) ②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문구수정>** ○ 근로자를 대변할 사람이 노동조합원 및 노동조합간부 등의 유지가 가능해야 함. ○ 제5조(임명) ②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은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위원,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 직에 있는 사람도 예외로 한다. 1. <삭제> 2. <삭제>	○ **(검토의견 : 미반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며 근로자이사는 비상임이사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을 맡을 수 없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안)
노사정 실무 TF	제6조(자격) ① 근로자이사는 소속되어 있는 공사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른 잔여 재직기간이 근로자이사의 임기에 미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이외의 공모자격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문구삭제>** ○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 사용자측이 정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이사의 공모자격을 정하는 경우 사측이 자의적으로 근로자에 불리한 조항을 넣을 수 있음. ○ 제6조(자격) ① 근로자이사는 소속되어 있는 공사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른 잔여 재직기간이 근로자이사의 임기에 미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삭제>**	제6조(자격) ① 근로자이사는 소속되어 있는 공사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른 잔여 재직기간이 근로자이사의 임기에 미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삭제> ○ **(검토의견 : 일부반영)** 선출 또는 추천 등 근로자이사의 임명절차 등을 정하고자하는 것이 당초 입법사유였으나, 노조에서 사측의 자의적인 운영을 우려하므로, 기존 제6조 제2항은 삭제함 다만, 제5조 제2항에 '근로자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자 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안)
변호사 오윤식 (법무법인 공간)	제6조(자격)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문구수정>** ○ 근로자가 인사처장이나 기획처장 등 직위에 있는 경우 근로자이사로 임명됨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례안 제6조제4항제3호는 삭제하여야 하며, 그 직에 해당하는 것의 입증까지 요구하면 제도운영상 무리가 있으므로 '당연히 퇴직한다.'로 수정. ○ 제6조(자격)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이사가 될 수 없다. 근로자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 3. <삭제>	제6조(자격)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검토의견 : 일부반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근로자이사로 임명하는 경우 근로자 특유의 현장경험을 경영에 접목한다는 제도의 기본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므로 존치하고, 입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제도운영상 무리이므로 문구수정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안)
변호사 오윤식 (법무법인 공간), 서울메트로 노동조합 위원장 김철관	제7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근로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2명 2.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1명 **<근로자이사 정수 증원>** ○ 근로자이사가 실질적으로 세를 규합할 수 있도록 기관별 2명이상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미만으로 근로자이사 정수를 증원 ○ 제7조(정수) 공사 등에 근로자이사로 2인을 두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공사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이를 증원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미반영)** 제도시행 초기로서 예측불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제도 확산을 위해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근로자이사 정수 1~2명 원안 유지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안)
변호사 오윤식 (법무법인 공간)	제10조(책임 등) 근로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근로자이사의 비밀준수의무 명문화>** ○ 근로자자이사에 대하여 그 경영정보 등에 관하여 근로자이사직 재직 중, 그 직 또는 근로자 지위 상실 후에도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제10조(근로자이사의 책임과 의무) ① 근로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이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 중 비밀에 해당하는 것, 기타 근로자이사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사임 또는 해임 등에 의하여 근로자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또는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검토의견 : 미반영)**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에 이미 비밀준수의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비밀준수의무만 명문화할 필요성 낮음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안)
변호사 오윤식 (법무법인 공간)	제12조(기관장의 책무) ② 기관장은 근로자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학습기회·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⑤ 근로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기관광의 정보 등 제공의무 부과>** ○ 소속 근로자가 근로자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직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정보, 재무정보나 그에 관한 자료 등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가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기관장의 정보나 자료제공 등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음 ○ 제12조(기관장의 책무) ② 기관장은 근로자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영	○ 제12조(기관장의 책무) ② 기관장은 근로자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학습기회·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⑤ 근로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기타 근로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 **(검토의견 : 일부반영)** 법령의 근거가 없이 기관장의 의무를 강행규정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나, 이사회 출석시간과 기타 근로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및 재무 등의 정보 내지 자료의 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이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내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공사 등의 기밀(機密)로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그 지득이 허용되는 정보나 자료에 대한 제공 요구 이외의 경우에는 이에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보 내지 자료 제공과 편의 제공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학습기회·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⑤ 근로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이사회 안건에 관하여 설명을 받는 시간 등 이에 부수한 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그 부수한 시간은 이사회시마다 의결로써 그 시간을 인정한다.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안)
서울메트로 노동조합 위원장 김철관	제13조(수당 등) ① 근로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검토, 이사회 참석 등에 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근로자이사의 보수규정 변경>** ○ 원직보수 원칙과 근로자이사 직무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지급이 되어야 함. ○ 제13조(수당 등) ① 근로자이사로서의 보수는 원직근무 보수로 하고, 직무수당에 따른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 **(검토의견 : 미반영)** 근로자이사는 비상임이사로 무보수가 원칙이며, 근로자이사는 비상임이사이자 직원으로서, 평상시에 직원의 자격으로 근무한 원직근무 보수는 지급받는 것임.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이 조례안은 서울시 산하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대표 1～2명을 비상임이사인 근로자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임
- 근로자이사는 원칙적으로 무보수이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검토, 이사회 참석 소요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이하 생략 ～

3. 미첨부 사유

- 근로자이사는 기관당 1～2명으로 모든 근로자이사의 연간 수당총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함

4. 작성자

- 공기업담당관 행정6 김성태(02-2133-6773)